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6. 10. 20.(목) 09:2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2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10월 7일에 있었던 제5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10월 12일에 있었던 제57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 유·노출 자진신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58-208~21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 유·노출 자진신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개인정보 유·노출 자진신고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배경은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개인정보 유·노출을 자진신고한 (주)강원심층수, (주)대교에듀피아, 서울소프트, 아시아나항공(주), 그리고 에스이십사(주) 5개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대교에듀피아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약 486,000여건을 수집·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심층수 등 5개 사업자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위반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그리고 과태료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심층수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또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하나, 1,044건을 파기 또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위반에 해당되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은 5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처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먼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위반한 대교에듀피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감경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기준금액인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강원심층수와 대교에듀피아는 위반행위가 2개이므로 50%를 가중해서 1,500만원, 아시아나항공과 에스이십사는 특별히 가중·감경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기준금액인 1,000만원, 그리고 서울소프트는 유출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서 소상공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를 위반한 강원심층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감경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기준금액인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입니다. 대교에듀피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평균 매출액에 보통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서 기준금액은 674만원으로 산정하고, 최근 3년간 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50%를 필수적으로 감경하고 자진신고와 그다음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서 30%를 추가적으로 감경해서 최종 23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심층수는 유출건수와 관련 매출액이 미미하고 자진신고, 시정조치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과 에스이십사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고, 노출 규모가 미미하며, 자진신고와 시정조치된 점을 고려하고, 서울소프트는 소상공인 기업, 그다음에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된 점 등을 고려해서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서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건은 모두 개인정보가 유·노출됐다고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에스이십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지만 노출만 됐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대교에듀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관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가 486,000여건입니다. 그렇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이것이 유출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부다 해커에 의해서 유출된 것입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2008년 이전 자료입니다. 백업해서 가지고 있어서 자기 네가 잘 몰라서 추후에 저희가 조사 들어갔을 때 발견이 되어서 그것은 삭제 조치했고, 유출된 것은 29,800건 정도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유출된 것은 29,800건?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사업자별 위반사항 중에 4페이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사업자별 법규위반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그리고 이용자의 비밀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런 것들이 위반사업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러한 행위 유형들이 이용자보호국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간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 이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해야 할 여러 가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된 이런 미이행한 행위들이 어떻습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냐, 고난도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는 개인정보책임자 또는 처리자들은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일종의 완성상시 이행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떠한 형태, 기본적으로 인식 부족이나 또는 교육,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매번 저희가 개인정보 위반 관련해서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주로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위반행위 내용을 분석해서, 지난 수년 동안 이런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얻어야 할 시사점은 이런 사건 분석을 통해

서 우리 민간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나 기술적인 조치나 전문가 인력의 확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런 것을 단순히 제재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정책도 담당하고 또 교육도 담당하고 이렇게 인식도 제고해야 하는 그런 종합적인 일을 해야 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이런 시사점을 얻어서 제재는 이렇게 하더라도 위반한 내용을 분석해서 더 종합적이고 차원을 달리한 계도나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직도 이런 유형의 위반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아주 이행하기가 힘든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기술적 수준을 봐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이 정도 해야 한대라고 하는, 미니멈 리콰이어먼트(Minimum requirement)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끊임없이 다른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에 보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한 매출액이 결국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이다, 그러면 지금 과징금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고려해서 부과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자란 말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 부과했을 때 보면 우리는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이렇게 부과하다 보면 그 금액은 전체 매출액에 비해서 아주 적어지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적은 것은 좋은데 그러면 과연 관련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것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영업보고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검증도 해서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를 보면 관련 매출액을 그래도 산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오프라인상에서 서비스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서 또 온라인상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기업 중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그것을 산정하려면 항공운수업이라면 관련된 법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어떤 규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등등 방법은 다양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뭔가 그런 제도 정비 내지는 산정기준, 산출기준에 대한 것을 차제에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법·제도를 처음부터 만들기보다 회계전문가나 법률전문가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서 오프라인의 사업이 큰 규모의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 관련해서 별첨 <붙임>에 보면 피심인별 일반현황에 상시 종업원 수가 있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 종업원 수는 이 회사의 전체 종업원 수를 이야기하니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종업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자에 해당합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다음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도 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이야기합니까,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입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여기에서 매출액은 위반 관련 매출액만 산정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현황의 위 분류에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왜냐하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현황과 이 숫자가 안 맞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고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설명회 형식으로도 하고 있고...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것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많이, 수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자별 범규위반 세부내용을 봤을 때 접근통제, 또는 접근통제 중에 아이디/패스워드만 하고 다른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또는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또 암호화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제재뿐만 아니고 교육에 좀 더 노력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관련해서 이기주 위원님께서 정확한 산출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해당 사업자의 자료를 저희가 다 받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워낙 요새 여러 업무들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것과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명확하게 전기통신역무와 무관한 사업,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을 구분해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앞으로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도 그 일부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하루 이틀에 검토할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갖고 과연 이런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라고 해서 관련매출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하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것보다는 단계별로, 위반 정도별로 정액과징금을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개인정보 관리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한다는 데에는 다들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노출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의도적인 유출 또는 해킹 당한 것은 중하게 제재하는 것이고, 노출이다 하는 것은 덜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같은 범주의 유출로 보는데, 다만 건수가 경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239건이 노출됐다고 보는데 그것이 인도인이 자기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건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출이라는 것은 보호·관리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드러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니까 제일 나쁜 것은 유출시킨 것, 돈 받고 팔았다든지, 넘겨줬다든지 능동적으로 전달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해킹 당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리고 오늘 보니까 노출인데 보호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놓아줬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출이라는 것이 해킹당한 것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킹당한 것은 열 사람이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해킹기술에 따라서는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출이라는 것은 무성의하거나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업을 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노출이 있으면 노출이 해킹당한 것보다는 더 중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어를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아뒀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커들에게 해킹당한 것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현행 법령상 유·노출의 구별이나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출사고는 내부에서든 또는 외부에서든 간에 고의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데 노출사고는 대부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또는 개편하는 과정에서 약간 개인정보에 관련된 고의적이 아닌 일종의 범죄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 김재홍 부위원장

- 일단 사고로 보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뭔가 관리가 완벽하게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서 그런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보통 노출사고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해킹도 얼마나 기술 수준이 높아졌느냐, 별 보잘 것 없는 해킹기술이었는데도 뚫렸다, 그것은 진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의도적인 유출과 그다음에 무방비 상태로 놓아둔 노출 그리고 해킹 이런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해킹 같은 그런 기술 없이도 공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깐, 그래서 그것 자체는 매

우 책임이 중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목적의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해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제3의 피해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노출의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 노출된 것을 다량으로 가져갔으면 그것은 사실상 유출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우연히 알려져서 바로 조치를 해서 그런 위험성이 확산되지는 않았던 사안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노출이 됐는데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 가져갔는지, 가져가지 않았는지를 기술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확인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손 댄는지 안 댄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로그기록을 저희들이 다 확인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노출 자진신고가 들어온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자진신고 들어온 수많은 사업자들 중에서 이렇게 적발된 것이 5개 기업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5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해 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얼핏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자진신고를 할 정도 같으면 아마 크게 위반, 자기들 실책이나 예러가 크게 없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처벌도 경미하게 받을 수 있겠다 싶어 자진신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진신고를 해 오지 않은 개인정보업체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실태를 조사하면 이런 위반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심지어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원이 다 걸렸습니다. 그런 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 아마 비밀비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비용 문제를 따져보고 싶은데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암호화 조치나 또는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존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에 기술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영세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붙임> 1페이지를 보면 종업원 수가 46명, 11명, 서울소프트는 종업원 수가 4명에 불과합니다. 3년 평균 매출액도 강원심층수는 2.2라고 하면 22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3년 평균 매출액이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위반 관련된 매출액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매출액도 적고 종업원 수도 아주 작은 영세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정보화 처리하는 데 따른 비용이 부담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는데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아주 영세사업자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지와 철학을 갖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아마 선뜻 실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영세사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좋은 행정을 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그런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신고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또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평균 접속자수를 기준으로 하든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든지 또는 우리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단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런 개인정보들이 보호조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태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사안이 발생하면 대체로 해당 기업이나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나 문화가 충분히 안착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보면 김석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쪽 이렇게 조사·제재 건을 검토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이나 문화 외에 해당 기업에서의 영업이나 경영활동의 편의성·신속성을 위해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그리고 이것은 다

기술적인 것도 있고 절차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떻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유인설 개인정보보호조사팀 사무관**

- 정보통신서비스업이 중심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같은 경우 개인정보 관련 기술이나 이런 업데이트 과정에서 주로 외부 용역을 주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마 경영이나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편리성이나 신속성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보보안 조치를 해 놓으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직원교육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것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뒤에 부분들도 다 연관이 됩니다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만 특히 유출이나 활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우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비하면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큼니다. 최근에 몇몇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것도 있고 아니면 여타 개보위나 이런 기관에서 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기업, 또 유출한 기업들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들이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패널티에 비하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큼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관련된 법규위반들을 우리가 조사·제재했던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의식의 문제냐, 아니면 그 기업의 정보보호 문화나 아니면 업무처리 문화의 문제냐? 그리고 유형도 의도적 노출이냐, 아니면 기술적 유출이냐, 방치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존에 우리가 조사·제재했던 건들을 통계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원인들을 단순히 법규의 몇 조 몇 항 위반했다, 이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정교한 개선대책이라든가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즉,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의 수위를 높이거나 시스템을 좀 더 대폭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대해서 지원

하고 교육하고 이런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숙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과제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58-213~21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주민등록번호 관련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는 지난 ‘14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12년 8월 17일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파기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파기여부 확인을 위해 이번에는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일평균 방문자 25,000명 이상 5만명 이상 사이트를 운영하는 102개 사업자와 추가로 민원신고된 총 1개 사업자를 포함해서 총 103개 사업자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조사대상 103개 사업자 중에서 루켄로프트, 여행박사, 통로이미지, 그리고 케이제이정보통신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망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케이제이정보통신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딸기커뮤니케이션은 주민등록번호 346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각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와 제4호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은 5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는 아래의 <표>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먼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련해서 위반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루켄로프트와 여행박사, 그리고 통로이미지는 이용자의 피해가 없는 점, 그 다음에 조사 당시 현장에서 파기 완료하여 시정조치된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액의 50%를 감

경하여 각각 500만원, 그리고 케이제이정보통신은 주민등록번호 보유건수가 약 450만건 이상으로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등을 고려해서 50%를 가중해서 1,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케이제이정보통신은 특별히 가중·감경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1,000만원, 그리고 딸기커뮤니케이션은 시정조치한 점과 또 소기업인 점을 감안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이 주민등록번호 파기 유예기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렇게 기획조사 쪽 연이어서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 관련해서 이렇게 위반한 것은 알겠는데 두 번째 보호조치 위반으로 제재하고자 하는 2개 업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별건 조사라고 해야 합니까? 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주 조사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했는데 나가서 조사하다가 저희들이 같이 적발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주민등록번호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를 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중에서 케이제이정보통신은 도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뒤의 것은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원래 나머지 102개 사업자는 저희들이 기획을 처음부터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일정 기간까지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기가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됨과 동시에 또 더 나아가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면 관련성이 있어서 제재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주민등록번호 파기 유예기간이 경과했고 파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정말 매우 중요하고 또 행정력,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 인력으로 이것이 정말 무리 일 텐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평균 방문자 25,000명 이상 5만명 이하 사이트를 이번에 점검했는데요, 5만명 이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1차, 2차 기획조사를 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케이제이정보통신은 무엇을 하는 서비스 회사입니까? 정보통신서비스업체인데 2건이 걸렸습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인터넷 설치·판매업체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하나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접근통제로 해서 1,500만원, 1,000만원 부과했는데..., 앞으로도 더 이런 기획조사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가능한 한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이용했던 업체들 전부다 대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100% 다 할 수 없으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샘플링을 하든지 일별백계를 하든지 해서 주민등록번호 파기가 100% 가깝게 다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1차, 2차, 3차 한 차례씩 기획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지금 121개, 67개, 이번에 103개 이렇게 3차 조사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전체 사업자들의 몇 퍼센트 정도를 1, 2, 3차 조사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를 든다면 사이트는 수없이 많을 것 같고, 수만 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또 걸리는 적발되는 업체 수가 자꾸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시 종업원 수가 4명도 있고, 11명, 8명 아주 영세사업자들입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아마 조사해 보면 적발된 건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정보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획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샘플링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전수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수조사할 인력도 없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조사방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더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6-58-21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에 최초 허가를 받은 종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은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등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11인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나> 재허가 심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청취 등을 통해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며, 법률요건의 심사와 계량·비계량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계량평가는 6점, 비계량평가는 94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적격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다>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위원회 허가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재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게 되며,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광고시장 공정 경쟁,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랩, 미디어랩에이의 경우에는 금년 12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내년 3월 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엠비엔미디어랩의 경우에는 내년 8월 25일부터 접수하여 내년 11월 중 의결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만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 이것은 전에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해서 일부 배점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반영된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실태에 관한 부분인데 소위 종편, 간편하게 종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종편마다 미디어랩을 따로 다 두고 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자사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랩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걱정되는 부분은 미디어랩을 따로 두고서 광고영업을 하는 목적이 자사의 보도 방향이라든가 또는 논조, 그런 광고와 방송내용의 연결고리를, 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미디어랩이라는 것을 두는 이런 공익적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걱정은 각 종편들이 갖고 있는 자사의 미디어랩이 과연 정말 논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광고영업과 보도를 연결 짓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본 바는 없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과거에 어떤 모 종편사에서 광고영업활동을 하는 미디어랩 직원이 편집회의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작년에 그런 유사한 사안으로 MBN의 경우가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만약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미디어랩의 설치목적은 또 법의 취지를 대단히 심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판단도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보도전문채널 같은 경우는 미디어랩을 설치하지 않고 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광고영업활동을 미디어랩이라는 중립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렇게 미디어랩의 실태가 그렇다면 지상파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으로 미디어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디어랩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모르겠습니다. 종편들이 처음 시작할 때 미디어랩이 각 개별사마다 그렇게 설치하도록 한,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개별 랩을 설치하게 된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 당시에 여러 관계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디어랩사 간의 공정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서 활동력들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체제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광고영업이 언론사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익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보도방향이라든가 방송프로그램의 광고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런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그만큼 방송의 사회적인 공적책임이라든가 또 방송이 갖고 있는 그런 공공성을 따

저볼 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종편도 그만큼 성장해서 사회적 책임을 또 공적책임을 다 완수해야 할 그런 위상을 또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못지않은 그런 사세도 갖고 있고, 또 그만큼 지위도 위상도 확보됐기 때문에 갈수록 사회적 책임과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을 이제는 떨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원론적으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송광고판매에서도 공익성·공정성을 중요한 심사항목 그리고 배점이 매우 무겁게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형태를 보면 KOBACO가 있고 많은 지상파방송사들에 대해서 광고판매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크리에이티브는 SBS와 그 네트워크사 10개사 이상의 방송사 광고판매대행을 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종편들은 1종편 1미디어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성·공정성·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이겠습니까? 공동으로 여러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해 주는 광고사가 있을 때에 그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광고사의 형태는 1사 1광고사가 아니라 여러 방송사를 모아서 광고판매대행해 주는 광고사 체제로 가야 공익성·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지금의 현 제도가 법제정 당시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허가 심사 때나 또는 재허가 심사 시에 알고 계시듯이 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틀을 고쳐주는 것과 그 틀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계, 학술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미 여러 차례 토론회, 세미나를 해서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1사 1미디어랩, 이것은 특혜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왜 종편만 그렇게 하느냐? 다른 지상파방송사들 다 공동으로 광고판매대행사를 두고 있는데 종편들만 1사 1미디어랩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비판이었고, 시민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당시 도입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김석진 위원께서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해 놓으니깐 이것이 독립적인 광고대행사이나, 그 방송사의 광고국이나, 이것이 구분이 안 되고 독립성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집·편성·제작회의에 미디어랩사 직원이 들어가서 발언하고 기사와 광고를 연계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학계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그때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판매제도를 하는 것이 방송광고의 사회적 책무,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입법사항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은 정부가 제안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 관장 집행기관인 정부 방통위에서 개정법률안을 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속기록은 공개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고 어떤 시민단체나 학술단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점을 발견했거나 심각하게 보았고 고민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하여튼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사무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도 도입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졌고, 아직 초기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정도

에는 정책연구과제를 통해서 보다 연구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2개 있는 보도PP도 미디어랩을 형식적으로라도 따로 두지 않았고 그냥 광고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보도PP는 정말 언론기능, 언론역할입니다. 그런 영향력이고 어떻게 보면 소셜파워(Social power)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보도언론 영향력을 가지고 광고업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편 4사와 보도PP 2개사, 6개사를 최소한 묶어서 공동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하는 광고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학계 의견이라든가 연구과제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필요하다면 빨리 연구용역을 주든가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기를 제안하고 강조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석진 위원님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거에 어느 종편의 미디어랩과 관련된 미디어랩상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 조사해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 나름대로 철저하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특정 종편 이외에 다른 종편의 경우에도 일부 내용을 점검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는 넓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선적으로는 이 재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빨리 종편 미디어랩의 실태를 점검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재허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종국적으로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종편 미디어랩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제시하시는 것처럼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히 연구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의견 내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다 정리해 버려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참고로 저도...

○ 고삼석 상임위원

- 안보다도 미디어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안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부위원장님과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광고판매에 있어서 공공성·공공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점수는 아닙니다만 배점도 그 부분에 좀 더 추가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미디어랩의 특히 방송광고영업에 있어서 공공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나온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상파나 종편PP에 미디어랩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재원 확보를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보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중립성·공정성이라는 것은 원래 보도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보도기능을 광고영업 하는 데 연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편 부분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우리도 조사·제재해서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보도PP의 경우는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보도PP의 경우는 보도와 광고를 연계했다는 이런 문제 지적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광고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또 각 방송사들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잡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보도전문PP가 보도와 광고영업을 연계함으로써 상당히 압박을 받고 또 대기업을 광고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태입니다. 이처럼 그래도 종편PP들에 대해서는 미디어랩법을 적용해서 부당광고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한데, 실제로 보도전문PP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당광고영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또

쉽게 민원처리를 못합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있지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랩 시스템으로 보도전문PP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보도PP 자체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 이러한 부당광고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즉 광고영업과 보도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보도와 연계한다거나 그다음에 편법·부당 협찬 유치라거나 이런 개별영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업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미디어랩의 허가 주체,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와 재승인의 주체인 우리 방통위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는 이 미디어랩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쪽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와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방송광고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잡음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절하면 좋겠지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배 국장님이나 다른 사무처에서 회의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 쉽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주겠습니다'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실제로 나중에 필요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은 다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과제를 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주느냐부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잘 정리하셨습니다만 저도 약간 의견이 있는데 그냥 일문일답으로 '알겠습니다', '용역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미디어랩법이 제정·시행되고 3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공정성·공익성·공공성 이런 공적책임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법 집행하는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체크할 수 있거나 제도개선을 하거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시정하는 틀이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계획처럼 재허가를 통해서 뭔가 저희의 정책 의지나 미디어랩법의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법, 두 번째는 미디어랩 제15조에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미디어랩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그리고 방송사업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그냥 문제제기가 있으면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처에서는 항상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얼럿(alert)한 상태에서 그것을 꼭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또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상시적으로 저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용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미디어랩법을 제가 쪽 훑어보니까 이것은 허가제도입니

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미디어랩이 몇 개 있어야 한다, 어느 방송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KOBACO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쉽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허가 심사를 통하면 누구든지 미디어랩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 미디어랩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된가 불만족스럽다면 큰 틀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시장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시장 진입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허가냐, 인가냐, 신고냐, 등록이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사업자 수를 정한다든가 누구는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전체 경제 시스템상에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허가 잘하시고 그리고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필요하면 조사를 잘하시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이 법 취지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미디어랩법이 이 시점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도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싶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각각의 의견들을 포함하고 사무처에서 또 생각하시는 이런 것을 해서 만약에 내년에 연구과제를 연구용역을 주어야겠다면 그것을 잘 생각해서 다음번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일 순서상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 방송시장조사과와 서로 협력을 해서 우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실태파악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되면 제재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허가를 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자료로 쓴다든지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데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덧붙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연구용역 과제 주는 것에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되는데 방송광고판매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거의 전국의 방송사를 대상으로 광고판매대행

을 해 주는 KOBACO가 있고, 10개 방송사 이상에 광고를 대행해 주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편들은 각사마다 하나의 광고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공정경쟁이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쉽게 접근하면 그것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심사항목 및 배점에 지난번에 티타임에서 지적했던 것에 있어서 공익성·공정성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30점에서 35점이 되었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것이 제일 중시해야 하는 항목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고 저도 그랬는데, 비중을 아래에 있는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45점 이것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사 시 고려사항을 들여다보니까 공익성·공정성에 대한 세부 고려사항이 약합니다.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니까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심사 시 고려사항을 보니까 사외이사, 감사 제도,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성·공정성 실현의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1>번 항목으로 올려서라도 공익성·공정성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이 항목의 배점을 좀 더 높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50점으로 하고 아래 쪽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이것은 각 미디어랩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고 경영의 합리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적 책무와 공익성·공정성을 우리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배점을 높이는 방법, 그런데 그 심사시 고려사항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감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 사외이사 제도 같은 것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쪽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말씀하신 대로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항목 비중을 높였으면 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지만 이 항목에서도 이미 반영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길어지는데 저는 어쨌든 부위원장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방송광고판

매계획의 공익성·공공성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은 대항목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사외이사, 감사 제도 등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 이런 것들도 공익성·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뒤에 보면 감점이 있습니다. 최대 10점 감점입니다. 허가조건 이행여부도 있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횟수, 이것이 최대한 10점, 각각 10점씩 감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미디어랩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2>번 카테고리에 있는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 이 부분의 첫 번째 항목 방송광고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인력구성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즉 미디어랩이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본사 광고영업 조직과 연계해서 할 경우는 사실은 미디어랩의 조직과 인력을 많이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판매대행의 조직과 인력 구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배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배점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큰 틀을 건드리기보다는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배점을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더 배려하는 고민을 실무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고삼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실상 그런 내용들을 심사는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심사사항, 소위 말하는 대항목 어디에 넣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심사시 고려사항, 이것이 나중에 세부심사기준을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때도 구체화될 것 같은데 그런 때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큰 틀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58-21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상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방송사업자별 순수외주비율을 규정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방송사업자별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규정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구체적인 순수외주비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표준계약서를 제도화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외주제작 인정기준 항목 용어를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순수외주제작 인정기준에 수익배분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예고기간 중에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측에서 일부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그동안 총 십 수 회에 걸친 의사수렴 중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고 또한 금번 개정안이 이를 토대로 문체부 합의 등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원안대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먼저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면 행정예고기간 중에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새로운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고시 개정안을 만들에 있어서 크게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그다음에 외주제작사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와 같은 내용으로 그쪽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일부 덜 반영되는 것을 더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양쪽의 의견을 다 받아서는 이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그것을 조정했고 그다음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지난번에 처음에 행정예고하기 전에 이미 보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의견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해 재허가 심사사항을 반영한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을 정하는 재허가 기준상의 「별표」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경과사항으로 오늘 의결해 주신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허가 심사기준으로서 허가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허가조건의 이행 실적과 심사사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심사사항과 배점 구성(안)은 오늘 기본계획에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11월경에 방통위에 의결 상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의결한 간략히 말씀드려서 미디어랩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심사사항이 고시에 심사사항 및 배점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들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다른 의견은 없고, 그렇다면 보고사유에 기본계획 이야기를 인용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보고사유 맨 처음에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것이 앞에 기본계획을 받아서 고시안에 반영하는 것인데 보고사유 앞에 그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클리어해질 수 있는 것을...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맞습니다. 그래서 경과사항으로 '오늘 의결해 주신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사실은...

○ **이기주 상임위원**

- 보고사유 앞에 그렇게 해야 기록상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입법예고를 해서 새로운 의견이 들어오면 혹시 개정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셨지만 이것은 고시 내용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반영할 여지는 있는 것이지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로서는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그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시에 담고자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고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보고사유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시에 스위스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손님이 오시는 일정이어서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논의를 서둘러서 할까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냥 지금 하시면 안 됩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10분 정도 해 보고 미진하면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여기에 이견이 없고, 오후에 하시면 참석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빨리 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출입기자들이 막 비명이 나오는데 일단 10분간이라도 해 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 배경과 협의체 운영 경과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에서 재송신을 위한 협상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에서는 협상원칙으로 법령준수 및 상호간 성실히 협상할 의무 명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상대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 제한 금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조항에 대한 법해석 지침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계약체결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협상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협상 개시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대가 및 기타 거래조건 협상 관련 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며, 대가 인상·인하 주장 시에는 주장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송신 중지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유료방송사업자는 2주 전부터 기존 가입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또는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행위유형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 요구를 금지하고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에 대한 판단 시 고려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체결 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사업자가 모두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

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가이드라인을 접수해 주시면 오늘 자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티타임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은 다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보탬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금지행위라든가 또 절차 이런 것을 다 규정했기 때문에 원만한 재송신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고생해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우려를 간단하게 한다면 이것이 방송사업자들 간의 계약에 관한 민간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따로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사무처에서 그런 보완책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서 중재 권한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던 되겠지만 그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먼저 구속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제3조에 따라서 방송법 그리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 지침으로 활용됩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협상절차 등을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는 소관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방송법 개정안을 방통위가 제시했을 때 3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방송유지·재개명령 그리고 직권조정, 재정제도 이렇게 3가지를 제안했었는데 실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제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방송유지·재개명령 제도와 오늘 보고드린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한 직권조정 제도 정도는 방통위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해 둘 것은 지상파 재전송 협상은 순수 민간 영역의 일만은 아닙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이를 위해서 나온 고민의 결과가 바로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협상절차, 대가 산정 기준, 그리고 필요시 대가 검증을 위한 협의제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방통위 내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상파 재전송 협상이 결렬되어서 재전송 중단을 무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유념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재송신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더라도 또 재송신 대가 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학공식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대입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논의한 결과 그와 같은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이번만이 아니고 수 해 전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사업자 간의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방송법 금지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채널의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 지침을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도 이런 재송신료 대가 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 성립을 위한 협상 환경 절차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 중에 법해석 지침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가 인상·인하 주장 시 주장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든지 또는 성실한 협상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서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또 단일안만을 강요하는 경우, 또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타 사업자들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불합리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거부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만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재송신 협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후 3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7분 폐회 】